

내가  
찾은  
권리



내가  
맡은  
책임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Contents

- 인권이 뭐예요?** 04 인권의 개념  
05 인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06 인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성장해 왔나요?

- 학생인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07 학생인권의 내용  
08 학생의 자유권  
09 학생의 복지권  
10 학생의 평등권

-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11 권리와 책임  
12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13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14 권리 실천 약속하기

- 누리고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와 책임** 15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  
16 '존중'의 권리와 책임  
17 '평화(비폭력)'을 위한 권리와 책임  
18 '쾌적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책임  
19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20 '수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  
21 '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와 책임  
22 '옹모'에 관한 권리와 책임  
23 '자치와 참여'에 대한 권리와 책임  
24 '의사표현'에 관한 권리와 책임  
25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  
26 '징계'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동등하다고 해서 개인들의 품성과 권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민주적이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야 하며,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책임의식은 당연한 것이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 즉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권리와 책임을 균형감 있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학생들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지, 학생인권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와 책임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누리고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올바로 이해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인권이 뭐예요?

## 인권의 개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어른과 아이, 피부색, 종교, 사는 곳이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갖는 권리로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선언을 살펴 볼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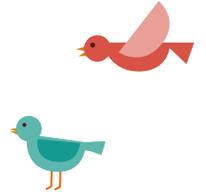
- 1948년 UN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다.

- 1966년 UN에서 제정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에서



## 인권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에 기초하여 나옵니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 존중할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은 사회의 관습이나 규범 등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권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입니다.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입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입니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권 침해 현상이 사회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집단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성장해 왔나요?

세대별 인권	인권의 목록들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li> <li>•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li> <li>•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li> <li>•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li> <li>•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li> <li>•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li> <li>•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li> <li>• 표현의 자유</li> <li>•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li> <li>•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li> </ul>
2세대 인권 사회권적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li> <li>•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li> <li>•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li> <li>•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li> <li>• 교육에 대한 권리</li> <li>• 문화에 대한 권리</li> </ul>
3세대 인권 집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li> <li>• 평화에 대한 권리</li> <li>• 발전권</li> <li>•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li> <li>• 다를 수 있는 권리</li> <li>•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li> </ul>



# 학생인권에 대해 알아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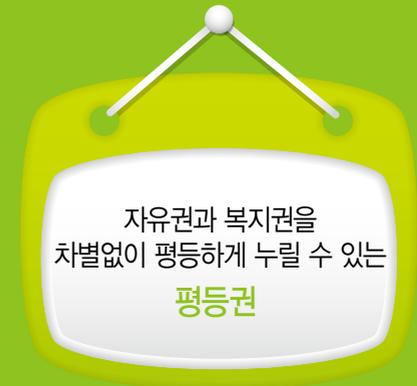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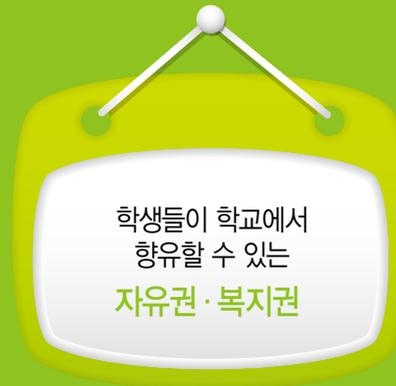
##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학생인권의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권,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권의 세 영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



## 학생의 자유권

학생의 자유권에 대한 보장은 학생이 설사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어떤 행동의 분이나 종류에 따라서는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학생자유권은 교사와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독립적인 자기 결정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의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자치와 참여권**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체의 자유**      학생은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등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습니다.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 표현의 자유**      학생은 언어,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 접근권**      학생은 학교에 의해 수집된 자기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생의 복지권

학생의 복지권에 대한 보장은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복지권을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학교)에 있습니다.

-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적합한 수준의 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건강권**      학생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전권**      학교는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가정에서의 학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이 부당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익을 제기하고, 권리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학생의 평등권



학생평등권이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옹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성, 장애, 인종, 출신 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평등권 위반 사례]

#### 학교 내 장애인 이동시설 미설치

학교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 금지



#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 권리와 책임

어떤 사람도 혼자 아니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구성체의 한 부분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국가나 사회, 집단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부딪치는 경우가 생기고, 한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내 권리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권리 없는 책임과 책임 없는 권리는 인정할 수도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존중받으려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더불어 학생들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이란 무엇을 해야만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임무나 의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를 자신이 감당해 내려고 합니다. 누구든 책임을 다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보상)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약속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그 말을 존중하고 약속에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약속에는 '자신의 말을 실천한다' 혹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임무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선생님들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회나 동아리 운영을 위한 책임을 맡기기도 합니다.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책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직업	모든 직업에는 특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며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법령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책임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관습	공동체의 생활습관인 관습에서도 많은 책임들이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은 종종 의무가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한 줄로 서 있는 것, 차례대로 순서를 지키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시민성	우리 사회에는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 등이 그 의무입니다.
도덕적 원리	옳고 그름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규칙이나 행동기준도 책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권리 없는 책임과 책임 없는 권리는 인정할 수 없음”

##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와 ‘틀리다’, 사뭇 다른 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여 사용합니다. ‘다르다’는 드러나는 모습을 서로 견주어 풀이하는 말이고, ‘틀리다’는 해 놓은 일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가능하는 말입니다.

“같은 부모한테 난 형제가 어찌 저리 다를까?”  
“제가 한 계산이 틀린 데가 있었습니까?”

위에서 보다시피 ‘다르다’는 형제의 모습을 서로 견주면서 쓰고, ‘틀리다’는 해 놓은 셈을 사실이라는 기준에 맞추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덮어놓고 ‘틀리다’라고만 합니다.

이래 문장들을 살펴보고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 나는 친구들과 얼굴, 코, 입, 손 등 생김새가 (달라요 / 틀려요)
- 흑인, 백인, 황인은 피부색이 (달라요 / 틀려요)
- 나는 친구들과 (달라서 / 틀려서)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 나는 볼 수 없어서 손으로 만져봐야 생김새를 알 수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 틀리기 때문이에요)



## 권리 실천 약속하기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예시

나 **김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위에 적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권리** (서명)

나                    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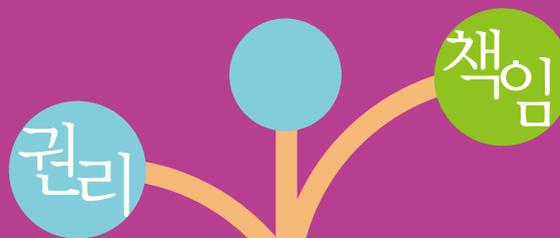


위에 적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 누리고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와 책임

먼저 **알아 두어야 할 것**



헌법, 국제인권조약,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장되는 학생의 권리는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됩니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학교 출석, 수업에서의 성실한 노력, 그리고 다른 학생의 수업이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질서 있는 학교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 ‘존중’의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로부터 공평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을 존중받으며, 그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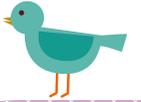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선생님의 권리와 권한,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존중하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타인에 대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거부하는 등 선생님의 권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학생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평화(비폭력)’를 위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일체의 폭력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책임

학생은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을 목격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학생은 상호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욕설·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고운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관계 법령에 의해 징계 조치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자연친화적인 공간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항상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책임

학생들은 각 학교의 시설이용 및 환경과 관련된 규칙을 항상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며,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는 등 쾌적한 환경의 청결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생과 선생님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 하에 최소한의 정도로만 허용됩니다.

## 책임

학생은 장비 및 학교 건물을 포함한 공공재산은 물론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개인 소유물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는 그에 대한 변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하고, 학교는 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업’에 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습,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책임

학생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시에 학교에 도착하여 성실히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은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선생님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중 ‘이동, 해당 과목 이외의 공부, 수면, 음식물 섭취, 휴대폰 사용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휴식과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공간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책임

학생은 휴식(식사시간 포함)시간에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휴식(식사시간 포함)시간에 본인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체육활동, 사행성 오락 등을 지양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취미와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용모’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학생의 용모에 관한 학교 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학생의 교복은 학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책임

학생은 교육적 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청결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별한 경우 안전 규범에 맞는 복장과 용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자치와 참여’에 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책임

학생은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구성한 모임과 기구의 활동들은 학교 규칙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나 도덕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자치기구는 학교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현’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책임

학생은 의사표현에 있어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악의적인 내용,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 훼손,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행위,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표현행위 등을 삼갈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공의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의사표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고,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책임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선생님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에 대해 선생님이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학생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학생이 거부할 시 학교는 교육적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학교 규칙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교는 교육적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징계’에 관한 권리와 책임

## 권리

학생은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하여 신상 정보를 포함한 징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징계 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징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만일 징계프로그램의 나태한 이행에 대하여 학교에서 추가적 조치(징계위원회 결정에 근거)를 취할 경우,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학생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성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찾은 권리  
내가 맡은 책임



지도·자문

정병석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장)



기획·집필

신길호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장학사)  
김재황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교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주무관)  
하정호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주무관)  
신수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주무관)



발행인  
발행처  
발행일  
주소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구)광주교육연수원 2층 민주인권교육센터

전화  
누리집

062) 712-6824~5  
<http://human.gen.go.kr>



## 잠깐! 인권침해를 당했나요?

민주인권교육센터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 상 담 전 화 : **062) 712-6827**
- 상 담 시 간 :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 온라인상담 : <http://human.gen.go.kr> ⇒ 상담게시판